

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0. 10. 12.)에서 의결된
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함.

2020년 10월 13일

고흥군의회 의장 송 영



규칙 제2020-29호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“예고(이하 “입법예고”라 한다)할 수 있다”를 “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(이하 “입법예고라”라 한다)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.

제39조의 제목 중 “(발언회수의 제한)”을 “(발언횟수의 제한)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회수”을 “횟수”로 한다.

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7조의2(긴급현안질문)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77조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사항 및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(이하 “현안질문”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를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⑥ 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문시간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.

⑦ 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의2(조례안의 입법예고)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(신·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(이하 "입법예고"라 한다) 할 수 있다.</p> <p>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39조(발언회수의 제한)</p> <p>제62조(위원의 발언)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</p>	<p>제23조의2(조례안의 입법예고)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(신·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<u>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</u> 예고(이하 "입법예고"라 한다)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"의견제출자"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</p> <p>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.</p> <p>제39조(발언회수의 제한)</p> <p>제62조(위원의 발언)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<u>회수</u>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7조의2(긴급현안질문)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77조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사항 및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(이하 “현안질문”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를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⑥ 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문시간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⑦ 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